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7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1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주택공급, 1인가구 및 청년지원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,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수·조교 및 시의회사무처 인력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의 총 정원을 18,944명에서 19,027명으로 83명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발전본부(한시기구) 폐지 감원(3급 △1명)
- 나. 기존 조직 기능조정·재배치 및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총 4급기구 개수 4개 증가(4급 +4명)
- 다. 주택공급·균형발전, 도시계획, 1인가구 및 청년 지원, 창업·4차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(5급이하 +52명)
- 라.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신설, 특별 교육수요 증가, 학생행정 운영 등을 위해 전임교수 및 조교 증원(전임교수 +15명, 조교 +6명)
- 마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 등 시의회사무처 정원 증원(5급이하 +6명)
- 바.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(74명)
 - ‘서울민주주의위원회’(합의제)를 재편하여 ‘시민협력국’(본청) 신설 등
 - ▶ (합의제) 2·3급 △1명, 4급 △4명, 5급 이하 △69명
 - (본 청) 2·3급 +1명, 4급 +4명, 5급 이하 +69명

사.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증원(+9명)

- (암사아리수정수센터 1) 고압전기안전관리 다군 +1

- (서울대공원 8) 동물관리요원 나군 △1, 동물사육 나군 +5, 동물박제 나군 +1, 동물사육 다군+3

▶ 서울대공원은 관리운영직 및 임기제 퇴직자 등 정원 상계조정(일반직 △8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5. 7.~5. 11, 5. 12.~5. 13.) 결과:

-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관련 부서단위 조직 신설 의견제출에 대해 정원 조정(반영)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,944명”을 “19,02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0,404명”을 “10,534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520명”을 “54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350명”을 “356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278명”을 “20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 계	11,635	
-----	--------	--

같은 표의 일반직 계란, 2·3급란, 3급란, 4급란, 5급 이하 소계란,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626	
-------	--------	--

2·3급	24	19		1	3	1
------	----	----	--	---	---	---

3급	18	9		1	8	
----	----	---	--	---	---	--

4급	253	155	17	8	66	7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5급 이하 소계	10,191					
----------	--------	--	--	--	--	--

전문경력관 소계	118					
----------	-----	--	--	--	--	--

같은 표의 교육공무원 계란, 교수 등란,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교육공무원 계	541					
---------	-----	--	--	--	--	--

교수 등	465			465		
------	-----	--	--	-----	--	--

조교	75					
----	----	--	--	--	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<u>18,944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u>10,404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<u>520명</u>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<u>350명</u></p> <p>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: <u>278명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[별표 4]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9,027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10,534명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541명</u> -----</p> <p>4. ----- <u>356명</u> -----</p> <p>5. ----- <u>204명</u>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4] ----- ----- -----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회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11,55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10,56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4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9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49</td> <td>147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66</td> <td>11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14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0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계</td> <td>3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상당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회행정기관	총계	11,552						정무직계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일반직계	10,564						1급	7	6	1				2·3급	24	18		1	3	2	3급	19	10		1	8		3·4급	5	5					4급	249	147	17	8	66	11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141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09						별정직계	37						4급상당	5	3	2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처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회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11,63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시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10,62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4</td> <td>19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8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53</td> <td>155</td> <td>17</td> <td>8</td> <td>66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 소계</td> <td>10,19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118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계</td> <td>3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상당</td> <td>5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회행정기관	총계	11,635						정무직계	4						시장	1	1					부시장	1	1				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일반직계	10,626						1급	7	6	1				2·3급	24	19		1	3	1	3급	18	9		1	8		3·4급	5	5					4급	253	155	17	8	66	7	4·5급	10	10					5급 이하 소계	10,191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18						별정직계	37						4급상당	5	3	2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회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11,55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10,5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4	18		1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9	10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49	147	17	8	66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1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0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계	3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상당	5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회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11,6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	1			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10,6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4	19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9	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53	155	17	8	66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 소계	10,1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1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계	3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상당	5	3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							개정안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	구분	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합의제행정기관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연구직 계	403						연구직 계	403					
연구관	62	4		34	24		연구관	62	4		34	24	
연구사	341						연구사	341					
지도직 계	24						지도직 계	24					
지도관	2			2			지도관	2			2		
지도사	22						지도사	22					
교육공무원 계	520						교육공무원 계	541					
총장	1			1			총장	1			1		
교수 등	450			450			교수 등	465			465		
조교	69						조교	75					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8,944명에서 19,027명으로 총 83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
(3급 △1, 4급 +4, 5급 +13, 6급 +26, 7급 +17, 8급 +△5, 9급 △1, 전문경력관 나군 +5, 전문경력관 다군 +4, 교수 +15, 조교 +6)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21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세입						
	소계(a)						
구분	인건비	3,123,564	6,390,812	6,537,801	6,688,170	6,841,998	29,582,345
	소계(b)	3,123,564	6,390,812	6,537,801	6,688,170	6,841,998	29,582,345
□ 총 비용(a-b)		3,123,564	6,390,812	6,537,801	6,688,170	6,841,998	29,582,345

※ 매년 인건비 상승률 2.3%('21년 기준) 적용 추계

※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 6개월분으로 비용추계[정원배정 시기 : '21.7월(예정)]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구분	지방세수입	3,123,564	6,390,812	6,537,801	6,688,170	6,841,998	29,582,345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3,123,564	6,390,812	6,537,801	6,688,170	6,841,998	29,582,345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철묵(02-2133-673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+83명

○ 일반직공무원 : +62명

- 3급 △1, 4급 +4, 5급 +13, 6급 +26, 7급 +17, 8급 △5, 9급 △1, 전문경력관 나군 +5,
전문경력관 다군 +4

○ 교육공무원 : +21명

- 교수 +15, 조교 +6

2. 비용소요 추계 : 6,247,128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	비 고
합 계	+6,247,128	<p>◆ 총 계 : +6,247,128</p> <p>○ 일반직(+62명) : +4,970,034</p> <p>▷ 3급(△1) : $110,622 \times \Delta 1\text{명} = - 110,622$</p> <p>▷ 4급(+4) : $102,597 \times 4\text{명} = 410,388$</p> <p>▷ 5급(+13) : $94,000 \times 13\text{명} = 1,222,000$</p> <p>▷ 6급(+26) : $74,111 \times 26\text{명} = 1,926,886$</p> <p>▷ 7급(+17) : $63,155 \times 17\text{명} = 1,073,635$</p> <p>▷ 8급(△5) : $46,181 \times \Delta 5\text{명} = - 230,905$</p> <p>▷ 9급(△1) : $38,531 \times \Delta 1\text{명} = - 38,531$</p> <p>▷ 전문경력관 나군(+5) : $86,143 \times 5\text{명} = 430,715$</p> <p>▷ 전문경력관 다군(+4) : $71,617 \times 4\text{명} = 286,468$</p> <p>○ 교육공무원(+21명) : +1,277,094</p> <p>▷ 교수(+15) : $66,010 \times 15\text{명} = 990,150$</p> <p>▷ 조교(+6) : $47,824 \times 6\text{명} = 286,944$</p>	'21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

※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